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68
------	------

2014. 2. 26.
재 정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11월 29일, 김용석·이진화의원

나. 회부일자 : 2013년 12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2.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됨.

창립 15주년을 맞은 지금 SBA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없이 서울시의 위탁전속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특히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에 노정되어 있음.

따라서 SBA에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미션과 기능을 부여하고 안정적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SBA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산업 전반의 진흥기반 조성 및 전략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능을 명문화하고,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의 고유사업 수행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1조제 및 제5조).
- 안정적 기업지원 수행을 위해 재산출연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 12조).
- 위탁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출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의 중소기업 진흥 육성을 위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한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기관명칭의 변경(안 조례 제명 및 제1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SBA”)은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최초 ‘서울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SBA는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은 기관명칭으로 변경·사용되고 있음.
- SBA는 설립 이후 애니메이션, 창업, 첨단산업, 게임 인큐베이팅, 통상, 지식산업, 사회적 배려기업 판매 등으로 사업의 외연을 확장해 왔음.
- 그러나, SBA의 양적성장이 주로 시의 위탁사무를 통해서 이루어져 오면서 최근에는 자체 고유사무 확대를 통한 기관 정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¹⁾.

1) 실제 2014년 SBA의 전체 수입(1,145억원) 가운데 위탁사업 예산(845억원)이 7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탁사업 의존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개정안은 SBA의 공식 명칭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실제 사업 영역 가운데 그 범위가 제한적인 통상 분야를 삭제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을 강조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적합하도록 기관 고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 할 수 있음.
- 다만, 지난 8년 동안 공식적으로 통용되던 기관 명칭의 갑작스런 변경은 자칫 내·외부 고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아울러, 명칭의 변경 과정에서 공모 등을 통해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직원들의 자존감 고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사업 범위의 변경(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기존의 SBA사업 범위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경영·기술지원, 자금·판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진흥 기반조성에서부터 전략산업 육성, 브랜드화, 융합, 창업보육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 기존의 사업 범위가 2005년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아

현재 SBA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인 창업보육이나 기업 브랜드화, 산업·기술간 융합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 범위의 변경과 구체화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SBA 설립 목적에 적합하도록 고유의 목적 사업을 확대해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비추어도 시 전체의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올해 1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정안에 사용된 일부 용어는 자치법규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비가 요구됨.

라.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시장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SBA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SBA 전체 사업 중 수탁사업 비율은 60%(22개 사업중 13개)에 이르고 있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전체 사업비의 89%를 수탁사업예산이 차지할 정도로 수탁사업 의존율이 높은 상황임(참고자료 1).
- 이처럼 SBA가 수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충원해 오는 과정에서 인력운영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개정안은 수탁사업 위주의 재정상황과 안정적인 수입 확보 등을 고려해 안 제17조제2항은 위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위탁 사업은 예산편성과 민간위탁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점에서 인건비를 별도의 출연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68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6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출연금 교부 기준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전략산업”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 나. 위탁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전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서울전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소기업”</u>이란 「<u>중소기업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p> <p>2. <u>“전략산업”</u>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지역특화산업”</u>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p>
<p>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u>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u>을 수행한다.</p> <p>1. <u>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u></p> <p>2. <u>서울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u></p> <p>3. ~ 11. (생략)</p>	<p>제5조(재단의 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u></p> <p>3. ~ 11. (개정안과 같음)</p>
<p>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다만, <u>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u></p>	<p>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u>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단서 삭제></u></p>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3. 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5. 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7.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8.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
9.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11.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제7조제1항 중 “1인”, “20인”, “2인”을 각각 “1명”, “20명”, “2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업무를 총괄하며”로,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49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u>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u>을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u>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지역특화산업”이란 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u>시 발전계획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p>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u>재단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관계법령에서</u>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u>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u>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u>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따른다</u>.</p>

현 행	개정안
<p>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u>중소기업</u>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u>각호의</u>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영·기술·정보 지원</u> 2. <u>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u> 3. <u>창업정보제공</u> 4. <u>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u> 5. <u>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u> 6. <u>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u> 7. <u>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u> 8. <u>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u> 9. <u>기타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u>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 <u><신설></u></p>	<p>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u>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u>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u>각호의</u>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u> 2. <u>서울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u> 3. <u>산업·금융·경영·무역·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u> 4. <u>인력·자금·투자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u> 5. <u>국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u> 6. <u>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u> 7. <u>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u> 8. <u>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기업보육에 관한 지원</u> 9. <u>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u> 10. <u>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u> 11. <u>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u>
<p>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u>1인</u>을 포함한 <u>20인</u> 이내의 이사와 감사 <u>2인</u>을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u>1명</u>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이사와 감사 <u>2명</u>을 둔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이사회) ① (생략)</p> <p>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p>	<p>제8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p>

현 행	개정안
<p>장이 되어 이사회의 <u>회무를 통할하며</u>,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생략)</p>	<p>장이 되어 이사회의 <u>업무를 총괄하며</u>,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대표이사과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u>통할</u>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대표이사과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u>총괄</u>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u>출연금</u>)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재단에 출연금을 <u>교부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u>출연금 등</u>)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u>예산의 범위에서</u> 재단에 출연금을 <u>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u>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u>일부를</u>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u>경비는 별도 협약에 의한다</u>.</p>	<p>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u>일부 또는 전부를</u>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u>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u>.</p>